

# 고성군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

(의안번호 제2059호)

## 심 사 보 고 서

#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9. 10. 07.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고 성 군 수  
나. 회 부 일 자 : 2019. 10. 08.  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2019. 10. 16.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총무위원회 상정·원안가결

### 2. 제정이유

- 고성군이 개최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하는 축제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쟁력 있는 축제를 육성함으로써 지역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

### 3. 주요내용

- 가. 목적 및 지원대상 축제 정의(안 제1조~제2조)  
나. 축제육성위원회 운영(안 제4조~제10조)  
다. 사업비 등 지원(안 제11조)  
라. 축제운영 및 평가(안 제12조~제13조)

### 4. 참고사항

- 가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첨부  
나. 합 의:  
1) 기획감사담당관: 규제심사  
2) 복지지원과: 성별영향분석 평가  
다. 기타사항  
1) 입법예고: 고성군공고 제2019 - 1061호

가) 예고기간: 2019. 8. 12. ~ 2019. 9. 2.(21일)

나) 예고결과: 의견 없음

2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
3)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
4) 비용추계서: 붙임

## 5. 본문: 붙임과 같음

## 6. 전문위원 검토요지

- 본 조례안은 고성군이 개최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하는 축제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쟁력 있는 축제를 육성함으로써 지역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
-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축제육성위원회(축제관련 사항 심의), 안 제11조 사업비 등의 지원(주관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), 안 제12조 축제의 자립화(주관단체는 축제 발전과 자립화 노력), 안 제13조 성과 평가(사업비를 지원한 축제에 매년 성과 평가 실시) 규정한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거나 사업비를 지원 할 수 있는 축제의 성격, 규모 등에 대한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## 7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생략(위원회 회의록 기재)

## 8. 토 론 : 없음.

## 9. 심사결과

- 2019. 10. 16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